

『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상호 의원 외 12명

2. 제안이유

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 문화 조성 등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정의,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
나.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,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
(안 제4조~제5조)

다. 안전교육, 주차시설,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8조)

라.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(안 제9조~제10조)

마. 협력체계 구축, 준용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~제12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, 「도로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3. 3. 3. ~ 3. 8.)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」 은,

- 개인형 이동장치(전동킥보드, 전동이륜평행차 등)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,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,
-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 업체는 5개, 1,850여대를 운영중에 있으며 관내 사고발생 건수도 '22년도에 18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사망자도 1명 발생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.
- 무단방치로 인한 각종 사고를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